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2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강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04. 15.
3. 회부연월일 : 2025. 0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이민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5조의2(이민처) ①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둔다.</u> <u>② 이민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u>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 관리</u>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③ (생략)	제32조(법무부) ① ----- -----<u>인권옹호</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 외국인주민¹⁾은 246만 명으로, 총인구(5,177

만명)의 약 4.8%에 해당함. 2013~2022년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013년 2.8%에서 2022년 4.4%로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함.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13~2022)】



주 : 외국인주민 현황은 기준시점(매년 11.1.) 전후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는 제외

자료 :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12.31. 기준)

한편, 법무부 2024년도 기준 출입국자(국민 및 외국인) 수는 약 912만 명²⁾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한 수준이고, 이 중 국내 체류외국인³⁾은 2025년 3월 말 기준 약 2,722만 명으로, 등록외국인 151만 명,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55만 명, 단기체류외국인 66만 명임.⁴⁾

1)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를 말함.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등이 있음.

2)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의 ‘외국인 주민’ 개념과 다른 조사로는 법무부 체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의 체류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있으며,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체류외국인은 2,036,075명, 2021년 체류외국인은 1,956,781명임.

3) “국내 체류외국인”은 관광 기타의 사유로 입국하여 90일 미만 단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함.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이처럼 국내 외국인주민이 급증하고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한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음.⁵⁾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13부 1청)별 기능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취업지원을,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을, 교육부는 외국인유학생 유치와 영어회화 강사 관련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재한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총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IT 우수인력 유치·교류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환승관광 활성화 및 공항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술교육 등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을, 해양수산부는 항만국경 관리 및 외국인선원 인권보호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기능 인력 지원을, 재외동포청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5)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인적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실용적인 목표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와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인진, 전환기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방안,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토론회, 재외동포포럼 제124차, 주최: 국회의원 이형석, (사)재외동포포럼, (사)재외동포연구원, 주관: 아시아발전재단)

【부처별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 주요 부처 현황】

부처	정책대상	기능
법무부	모든 외국인	외국인정책 총괄, 비자발급, 국적, 체류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난민정책, 외국적동포정책, 영주·귀화 정책, 사회통합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 지원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 취업지원
행정안전부	등록외국인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유치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영어강사 등	외국인유학생 유치, 영어회화 강사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	외국인력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총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저출산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인재	기초과학·IT 우수인력 유치·교류
국토교통부	외국인관광객	외국인 환승관광 활성화, 공항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기술교육 등 농촌다문화가족 지원
해양수산부	외국인근로자	항만국경 관리,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기능 인력 지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정책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행정 각부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처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주민 및 체류외국인 증가 등 외국인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로 외국인 인권보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진정한 사회통합 지향 등 외국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임.⁶⁾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을 수용하여 차관급 기관인 ‘이민처’를 설립하는 경우 조직·정원의 확대 및 추가 예산 소요가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민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86억 6,400만원(연평균 77억 3,300만원)의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함.

둘째,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

6) “한국에서는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 이민 행정조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이민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게 필수다.”,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설동훈, 문화와 정치 제4권 제3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이민정책은 국경관리, 외국인력 유치와 활용, 이민자 사회통합과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포함한다.”, 「전환기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방안」, 윤인진,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토론회, 재외동포포럼 제124차(주최: 국회의원 이형석, (사)재외동포포럼, (사)재외동포연구원, 주관: 아시아발전재단).

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관계 행정부처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법률적으로 3개 위원회에서 외국인 정책 분야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드는 경우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혼선 및 업무중복 등이 야기될 수 있어 보이고, 현행 체계상 총괄·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각계의 의견수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스위스의 경우 법무경찰부 연방이민청, 네덜란드의 경우 법무안전부 이민귀화청, 독일의 경우 내무부 연방이민난민청 등 OECD 주요국의 이민정책 전담 조직은 각국의 법무부 또는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7) 【외국인 정책 분야별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소속 (설치시기)	근거법률	주관 부처	기능
외국인 정책위원회	국무총리 (’07.07.)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 제8조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관련 사항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국무총리 (’04.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송출 국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국무총리 (’09.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4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조사, 연구 등

자료 : 행정안전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이민 관련 사무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근로자, 주민정착, 복지·의료서비스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 기능을 기획업무 중심인 총리실 산하 처(處)로 이관하는 경우 법집행 및 질서유지 기능의 약화로 불법체류·범죄의 증가가 우려되고, 법적 전문성 및 행정 경험을 고려하여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39